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10. 11 선고 2023가단507589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조정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평

담당변호사 정영석, 최현

변 론 종 결 2024. 9. 13.

판 결 선 고 2024. 10. 11.

주 문

1. 피고와 C 사이에 D지사 배달대행 영업에 관하여 2022. 11. 15.경 체결된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배달서비스업, 이륜자동차 및 기타운송수단 대행업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배달대행업체를 직접 운영하거나, 배달대행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국의 배달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에게 제공하고 배달대행수수료를 수취하여 배분하는 업을 하고 있다. C은 2022. 5. 10.경 원고와 피고와 배달대행플랫폼 지사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E 부천 D지사를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C에게 아래와 같이 금전을 대여하되, 일 차감 납입을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이를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일자	대여원금	이자	변제방법
2022. 5. 25.	80,000,000	연 4.8%	2022. 5. 26.부터 2025. 5. 24.까지 일 78,451원씩 원리금 균등 상환
2022. 6. 15.	50,000,000	상동	2022. 6. 16.부터 2025. 6. 14.까지 일 49,032원씩 원리금 균등 상환
2022. 7. 15.	50,000,000	상동	2022. 7. 16.부터 2025. 7. 14.까지 일 49,032원씩 원리금 균등 상환

다. C은 2022. 11. 15. 피고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E 부천 D지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배달대행, 거래가맹점 및 기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 단 부채는 제외)를 대금 120,000,000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양수한 후 배달플랫폼을 ‘F’로 변경하여 ‘F G점’으로 운영하고 있다.

라. C은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일 무렵부터 현재까지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1) 피보전채권의 존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다7642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일인 2022. 11. 5.경에는 이 사건 각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이미 채권발생의 기초가 되는 각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 점, C은 2010년도 및 2015년도에 다수의 채권자들로부터 압류집행을 당하였고, 2019경에는 파산신청을 하였다가 2021. 2.경 파산폐지 결정을 받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 당시 별다른 자산이나 소득원이 없었던 C으로서 E 부천 D지사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의 소득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C은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22. 12.부터는 원고에게 매일 지급해야 할 상환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C에 대한 위 각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행위의 성립

채무자가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일체로서의 영업을 양도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을 심화시킨 경우, 영업양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무렵 C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와 같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그의 거의 유일한 재산인 E 부천 D지사의 영업을 양도한 행위는 C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3) 수익자의 악의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양도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이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대법원 1969. 1. 8. 선고 68다2022 판결,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1489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또는 전득행위 당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 당시 C에 대하여 3,300만 원 정도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어서 피고는 당시 C의 자력이 충분하기 못함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 당시 사해행위가 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사해행위취소의 방법과 범위에 관한 판단

1) 원상회복의 방법

영업양도 후 종래의 영업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하면서 동일성을 유지한 채 채무자에게 회복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채권자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보전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영업재산과 영업권이 포함된 일체로서의 영업의 가액을

반환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다84162 판결 등).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이 2022. 11. 15. 이 사건 영업을 양도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점, 피고는 이미 이 사건 사업장에 관하여 F 배달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물반환이 이루어질 경우 위 배달플랫폼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H과의 채권채무 정산관계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업장으로부터 배달대행서비스를 받는 가맹점 또한 변동하였을 것이고 그에 기하여 새로운 채권·채무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생활상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 관념에 비추어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의 대상인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은 그 자체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의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가액배상의 범위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업장의 영업양도 가액이 120,000,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채권액이 이를 초과하고 있으므로, 더 적은 금액인 위 영업양도 가액이 가액배상금이 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철